

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제

호

부산직할시사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 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, 경영하는 학교법인(재단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취득·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면제대상) 학교법인이 비행연습, 기기의 제작·조립·운전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.

제 3 조(면제신청 등) 1.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.

2.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4 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(적용시한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